

[ ]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( [ ]예술인 [ ]노무제공자 )  
[ ]산재보험 입직 신고서

※ 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“√” 표시를 합니다.

(3쪽 중 1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5일
------	-----	------	----

사업장	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	이용개시번호	전화번호	팩스번호
	명칭	단위사업장 명칭	영업소 명칭	
	소재지	우편번호( )		

보험사무대행기관	번호	명칭	하수급인 관리번호(정부·공공발주사업의 문화예술용역계약 사업 등의 하수급인만 해당합니다)
----------	----	----	--

연번	성명	공통		고용보험				산재보험	
	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직종부호	자격취득일	국적	체류자격	월평균보수(월보수액)	입직일	휴대전화
1									
2									

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5제1항·제77조의7제1항·제77조의10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6제1항·제104조의12제1항·104조의13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제1항제1호·제125조의9제1항제1호 및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보험자격취득·입직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(사용자·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보험사무대행기관

(서명 또는 인)

근로복지공단 ○○지역본부(지사·센터)장 귀하

유의사항

1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(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)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「고용보험법」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제1항제1호·제6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작성 방법

사업장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장관리번호를 적고,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를 적습니다.</li> <li>2. 이용개시번호는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주의 이용개시번호를 말하며,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만 적습니다.</li> </ol>
공통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란에는 주민등록표(외국인등록증)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를 적습니다.</li> <li>2. 직종부호란에는 [3쪽]의 직종부호를 참고하여 적습니다.</li> </ol>
고용보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자격 취득일은 해당 사업장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노무제공 개시일을 말합니다.</li> <li>2. 국적 및 체류자격은 외국인등록증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게 작성하며, 외국인만 적습니다.</li> <li>3. 예술인의 경우 월평균보수(월보수액)는 “월평균보수” (노무제공 개시 이후 1년간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 총액을 예상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)를 적습니다.</li> <li>4. 노무제공자의 경우 월평균보수(월보수액)는 "월 보수액"(노무제공월에 실제 지급된 보수액 또는 노무제공 개시 이후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액)을 적습니다. 다만, 직종이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6조의6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(직종부호: 952), 수출입컨테이너·시멘트·철강재·위험물질·자동차·곡물가루·곡물·사료의 운송 화물차주(직종부호: 953~956, 962, 963), 택배 지·간선기사(직종부호: 961), 골프장 캐디(직종부호: 959)에 해당하는 경우 월보수액을 적지 않습니다.</li> </ol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p>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액: 「소득세법」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·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.</p> </div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5. 노무제공자(제4호 단서의 노무제공자는 제외)의 경우 별도 서식인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(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55호의2서식 사용)를 작성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월 보수액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</li> </ol>
산재보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이 서식은 건설업 및 벌목업 외의 사업(건설장비운영업 포함)에 노무를 제공하는 건설기계조종사(직종부호: 952) 및 살수차·고소작업차·카고크레인 조종사(직종부호: 986)인 경우 작성합니다. 다만, 골프장 캐디(직종부호: 959)는 입직일이 2023. 12. 31. 이전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        ※ 그 외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의 경우 별도의 입직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,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 말일까지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(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55호의2서식)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2. 입직일은 해당 사업장의 노무제공 개시일을 말합니다.</li> </ol>

